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가단59103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정** (68****-2)
서울 은평구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진승우

피 고 1. 기** (63****-1)
인천
2. 박** (64****-1)
부산
3. 우** (65****-2)
거제시
4. 윤** (84****-1)
의정부시
5. 백** (68*****-2)
포항시
6. 임** (68****-1)
전주시
7. 유** (74****-2)
창원시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3. 27.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기@@은 3,717,180원, 피고 박@@은 3,710,581원, 피고 우@@은 3,720,583원, 피고 윤@@은 3,784,837원, 피고 백@@은 3,740,980원, 피고 임@@은 3,754,580원, 피고 유@@은 3,004,3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6.부터 2012. 3.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기@@은 6,111,500원, 피고 박@@은 6,112,500원, 피고 우@@은 6,122,500원, 피고 윤@@은 6,132,500원, 피고 백@@은 6,142,500원, 피고 임@@은 6,152,500원, 피고 유@@은 5,00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9. 5.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임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등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으니, 수사를 위하여 검찰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및 금융계좌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검찰청 사칭의 홈페이지(www.spogobim.com)에 접속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1. 9. 5.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395-910070-*****)에서 피고들 명의의 각 은행계좌로 합계 49,049,000원을 송금하였고, 다시 아래 각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들 명의의 각 은행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은 아래와 표 잔액란 기재와 같다.

송금 받은 사람	계좌번호	송금합계액 (원)	잔액 (원)	비고
기@@	농협 35200957*****	6,111,500	125,700	
박@@	농협 121058561*****	6,112,500	107,703	
우@@	농협 35102170*****	6,122,500	117,708	
윤@@	농협 35103796*****	6,132,500	263,344	
백@@	국민은행 637801042*****	6,142,500	138,700	
임@@	농협 35203195*****	6,152,500	157,700	
유@@	농협 35201232*****	12,275,000	3,438	7,270,000원 변제

(3) 피고 기@@은 2011. 8. 28.경 위 (2)항 기재 통장을 재발급받아 이를 체크카드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박@@, 우@@, 윤@@, 백@@, 임@@, 유@@

은 2011. 9. 2.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각 그 명의의 위 (2)항 기재 통장과 체크카드를 킷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들은 위 (3)항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인해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검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5) 한편 피고 유@@은 원고에게 7,27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을나1, 을바1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부곡농협조합장, 거진농협조합장, 해운대농협조합장, 장승포농협조합장, 오산농협조합장, 국민은행장, 전주농협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피고들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송금합계액을 송금받아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합계 49,049,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피고들의 이익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만 피고들 명의의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1.의 (2)항 표 기재 각 잔액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무릇 수 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금융편의를 피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규정이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사람은 사익을 도모하고자 전자금융거래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거래질서를 교란한다는 사회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10헌바115 결정 참조).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원고

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한 다음 그들로부터 입금을 하게 하여 그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피고들이 '보이스피싱'의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들은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렇듯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다만 원고로서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go.kr" 등으로 표시되는 국가기관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검찰청을 사칭하는 홈페이지(www.spogobim.com)에 만연히 접속하여, 경솔하게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손해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5)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들이 원고 계좌에서 각 송금받은 금액에서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 및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60%를 곱한 금액(계산의 편의상 1원 미만은 버린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아래 표 ②열 기재 각 금원)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아래 표 ④열 기재 각 금원)으로 아래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아래 표 ⑤열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9. 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단위 : 원).

피 고	① 송금합계액	② 잔액	③ 변제액	손해배상액[④ = (①-②-③)×0.6]	인용금액 (⑤ = ② + ④)
기@@	6,111,500	125,700	0	3,591,480	3,717,180
박@@	6,112,500	107,703	0	3,602,878	3,710,581
우@@	6,122,500	117,708	0	3,602,875	3,720,583
윤@@	6,132,500	263,344	0	3,521,493	3,784,837
백@@	6,142,500	138,700	0	3,602,280	3,740,980
임@@	6,152,500	157,700	0	3,596,880	3,754,580
유@@	12,275,000	3,438	7,270,0000	3,000,937	3,004,375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영